

<p>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섬에 밤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li> <li>○ 하상 청소에 수고한 특전사 대원들을 환대해 주고, 계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전사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강구</li> <li>○ 한강시민공원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li> <li>○ 난지 한강공원의 캠핑장 시설은 ভাল 일이며, 이번 시범운행을 참고해서 타 한강공원에도 확대. 신선했던 것을 제안하며, 또한 일반시민이 가족 단위로 본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li> </ul> <p>IV. 기타 감사의견, 자료제출 등 - 1건</p> <p>가. 한강관리사업소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전에 조순 시장과 함께 밤섬 청소를 위하여 밤섬을 방문시에 밤섬에 밤식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사비(私費) 100만원을 보내서 밤나무, 조팝나무, 짙레나무 등을 심은 일이 있는데 그 후의 생성상태를 확인해 주기 바라면서, 추가로 사비(私費) 100만원을 기부할 것이니 전액 밤나무만을 식재할 수 있는지의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람.</li> </ul> <p>-----</p> <p>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p> <p>서울특별시장이 1999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유</p> <p>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99.4.22) 되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11.11자로 시의회에 부의하였으나,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조항변경 및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 개입이 우려되는 조항 삭제요구 등 추가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기이 부의된 조례안을 새로이 정비하여 재부의코자 철회함.</p> <p>-----</p> <p>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타도입관련재정지원</p>	<p>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총괄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99.4.15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li> </ul> <p>(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5. 10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및 충전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관련 재정지원조례" 제정 당시에는 모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융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99.4.15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6조의2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 1조에 융자금 지원 외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임.</li> <li>○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도입계획을 보면 서울시내 79개 운수업체 시내버스 총 8,391대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보급목표 기간으로 정하고, 1단계인 1999년부터 2002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2,000대, 충전시설은 40개소를 추진하며, 2단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6,391대 전원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0년도 도입계획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480대와 충전시설 13개소를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음. '99.12월 천연가스 시내버스 제작사와 환경부간에 최종 합의된 천연가스 시내버스 가격은 종전의 예정가격 7,5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결정되어 경유버스와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구입가격의 차액 3,100만원을 지원토록 결정하고, 구입 1대당 1,650만원을 무상보조(국비 및 시비 각 50%) 하고 1,450만원은 연리 5%,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총 69억 60백만원을 시비로 추경편성 조치하고, 충전시설 설치비용 개소당 7억원은 국비에</li> </ul>
---	--